

검사 작성 조서의 진정 성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4.12.16. 선고 2002도537판결 평석]

양 종 모*

I. 사안

피고인은 사기,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주된 공소사실은 “1994. 4. 경 피고인이 병원장인 최 모에게 기준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을로부터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1,700만원의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병원장인 최 모에게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일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병원장 최 모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참고인인 보험사 직원 오 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및 동인이 검사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유죄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최 모와 오 모는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자신들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제1심에서의 변론과 항소이유 등에서 최 모에게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최 모, 참고인 오 모에 대한 조서들은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하였다.

1심과 항소심이 이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들인 죄 모와 오 모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러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II.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 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비록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조서열람권, 증감변경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으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의 경우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만일 원진술자가 그 진술조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으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동일한 요건에 따라 진정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실무상으로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조서열람권, 증감변경청구권 등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 인정 요건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 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외는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¹⁾를 모두 변경하였다.

III. 검토

1. 본 판결의 내용분석

본건 대법원 판결은 성립의 진정 개념에 대하여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형식적 진정성립의 인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폐기하고,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라는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뿐 그동안 인정하여

1) 대법원 84.6.26. 선고 84도748판결, 86.3.25. 선고 86도 218판결, 92.6.23. 선고 92도787 판결 등 다수.

온 실질적 진정 성립 추정론의 폐기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추정론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력을 가지고 있고 검사 작성의 조서를 사경의 조서와 차별하여 증거능력 부여에 차이를 두고자 한 입법적 결단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²⁾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 판결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³⁾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절차 무력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인 수사검사나 입회계장 등의 증언 관행, 조사과정의 녹화 등 수사과정 가시화를 통하여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입증할 수 있는 방도의 모색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

2. 형소법 제312조 1항 본문과 단서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

위와 같은 급작스러운 대법원의 입장 변경에 따라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하여 위 판결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는 법 제 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은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의미한다는 극단적 주장⁴⁾도 있으나 수긍기는 어렵고, 판례도 일관되게 성립의 진정은 실질적 진정까지 인정되어야한다⁵⁾고 해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논의는 제 312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종전 판례가 “제 312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가 진정 성립과 별개의 추가적 요건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특신상태에 대하여도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입장에 관하여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판정하면 된다는 입장⁶⁾을 취해왔으므로 특신상태가 진정 성립과 별개의 추가요건으로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6, 대명출판사, 878면.

3) 심희기, 「검면조서등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와 인정방법」, 법률신문 2005.1.13. 15면 판례평석.

4) 이완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능력」, 저스티스 2004년 10월호.

5) 대법원 90.10.16. 선고 90도1474판결, 2002.8.23. 선고 2002도 2112호 판결등 다수.

6) 대법원 86. 11.25. 선고 83도 1718판결, 대법원84.5.29.선고 84도 378 판결.

가. 가중설(다수설)⁷⁾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증거능력의 인정의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로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이 당연히 전제된다.

나. 완화설(소수설)⁸⁾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가사 성립의 진정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법 제 312조 제1항의 문언 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가중설의 채택은 실질적 진정 성립의 추정이 부정되는 입장 하에서라면 다음 단계인 신용성의 정황적보장이니 하는 특신상태의 존부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장 변경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난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여부에 불문하고 특신상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는 완화설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3. 조서재판의 완화 혹은 검사 수사절차의 무력화

가. '실질적 진정 성립'과 '내용의 인정'

위 판결과 같이 검사 작성 조서도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함은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사경 작성의 조서와의 차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것은 결국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나 그 품격에서 차이가 없고, 그 산물인 조서도 마찬가지라도 대법

7)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6, 517면,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605면,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620면,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338면,

8)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2, 577면, 정웅석, 앞의 책, 878면.

원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여도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검사 작성의 조서도 당사자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실제 당사자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방도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증거능력이 박탈되며, 그 점에서 사경 작성의 조서와 격이 같아졌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서재판의 완화

조서의 증거능력이 넓게 인정되고, 법 실무상 조서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박탈은 조서재판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⁹⁾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조서재판의 폐단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로 인하여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법 실무상 조서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천착하여볼 필요는 없을까.

공판정에서 직접 심리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위증이 횡행하고 있으며, 수사를 거치면서 노정된 여러 가지 쟁점을 토대로 준비되고 각색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협박이나 회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증인 등의 증언만으로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족한 것인지. 오히려 수사 초기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고, 협박이나 회유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어서 비교적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하고 피의자 변명의 모순을 추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끌어낸 피의자의 자백이 훨씬 신빙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 실무상 신빙성이 있는 조서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할 경우 조서재판이라며 폄하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위 판결이 이러한 조서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영역에서 배제한 채 공판정에서 직접 심리하여 획득한 증거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차치하고라도 유죄자 불별의 불합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 심희기, 앞의 판례평석.

다. 검사 수사절차의 무력화

실무에서는 사경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은 없으나 은밀한 의견 개진은 있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와 맞물려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였지만,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현행 법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초동수사 절차가 갖는 중요성에 비하여 증거능력 부정의 길이 너무나 쉽게 열려져 있어 결국 검찰에서 증거능력 부여의 의미에서라도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는 절차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수사 인력의 낭비, 당사자가 받는 이중의 고통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례의 변경으로 위와 같은 논의는 무색하여져 버렸다. 오히려 검사 작성의 조서마저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로 증거능력이 박탈되는 길을 열어 놓게 됨에 따라 향후 수사절차의 방향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로 기존의 검찰 수사 절차는 완전히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법정에서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법관과 동일한 자격과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를 갖춘 검사가 여행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행하여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사실상 증거능력 판단이나 부여의 권한이 장래 피고인이 될 피의자에게 전속된 상태에서 그때마다 조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판단하는 일은 검사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한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들을 조사하여 획득하는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도 추궁을 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그에 따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시스템 하에서는 검사의 수사가 피고인에 대응하는 타방 당사자로서 공소제기에 유리한 자료 수집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록 검사 작성의 조서가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실 규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위한 수사가 행하여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사 작성의 조서가 생산될 것이며, 이러한 조서들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불기

소처분에 대한 불복시스템에서는 무제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일 것이다.

공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박탈의 손쉬운 길이 열려있다 하여 현행 수사절차상 검사의 조서 작성 불요를 운위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다른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와 차별성이 인정되기에 검사의 조서작성이 필수적이란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해소방안 마련에 골몰하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 판결을 계기로 진상을 가리기 위하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확인적 의미의 피고인 신문만 하고 조서 작성을 생략하는 방향으로의 획기적 업무경감방안을 도모할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의 한 축이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념은 퇴색이 되고, 유죄자 불벌의 현상이 만연되면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귀결이며, 사회적으로도 정의 관념의 후퇴가 필연적 현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한 증거 수집은 객관적인 증거에 국한될 것이고, 따라서 조직범죄나 뇌물범죄, 지능범죄와 같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외부인의 관여가 없거나 피해자가 없어서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혐의자나 주변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필연적인 사건의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 실질적 진정 성립 부정의 경우 증거능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검토

위 판결 선고 전부터 추정론의 폐지를 거론하여 오던 입장에서도 유죄자 불벌을 우려하는 검찰의 입장에 대하여 몇 가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¹⁰⁾ 위 판결 후에 위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같은 견해에 서는 논자도 있다.¹¹⁾ 그 제시된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첫째, 실질적 진정 성립이 다투어질 때 검찰 조사를 담당한 수사검사나 참여한 검찰수사관, 입회계장, 주사 등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보고 들은 사항을 증언하는 실무관행의 정립이 필요하다¹²⁾는 점에 대하여 본다. 물론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

10) 심희기, 「검사면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2단계추정론'의 당부」, 법률신문, 2004.10.4. 15면. 판례논단.

11) 백형구, 「검찰조서에 있어 성립의 진정」, 법률신문, 2005.3.14. 15면, 판례평석.

12) 심희기, 앞의 판례논단, 「검사면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2단계추정론'의 당부」.

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¹³⁾이론의 변경을 선결과제로 하고 있지만, 위 판결에 의하면 그런 길조차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미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참여시키거나, 피의자신문과정을 녹음·녹화해두어 실질적 성립의 진정, 임의성, 특신 상황의 입장에 대비하고 수사과정의 가시화를 도모하는 방안¹⁴⁾이다. 그러나 역시 위 판결의 설시와 같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조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녹음·녹화를 조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¹⁵⁾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IV. 결론

대법원이 법 조문의 문언적 의미에 집착하여 합목적적 고려와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형성하여온 종래의 추정론을 “공판중심주의”의 미명아래 일거에 폐기하고, 뒤이은 동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 취지에 따른 하급심 판결이 뒤따르면서 유죄자 불별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언적 의미에 집착하는 법원의 판결 경향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마땅한 일이나, 조서재판의 폐해를 지적하는 현재의 분위기 하에서 그런 결단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된다.

오히려 대법원이 문언적 의미에의 집착을 버리고, 법조문의 전체적 체계, 입법자의 결단 등과 실체적 진실발견과 당사자주의의 조화차원에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된다는 종전 판례로의 회귀를 하든지, 아니면 진정성립의 방안을 다양하게 인정하거나, 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을 완화설에 입각하여 하는 새로운 입장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검사, 진정성립, 증거능력, 조서재판, 대법원, 추정, 판례

13) 대법원 80.8.12. 선고 80도1364판결, 대법원 83.6.14.선고 83도1011판결, 대법원 84.1.24.선고 83도3032판결, 대법원 84.2.28.선고 83도3223판결.

14) 심희기, 앞의 판례논단.

15) 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도3161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abstract]

The true formation of prosecution's interrogation

Yang, Jong-mo*

The recent doctrine in the Supreme Court is only originally statement as ability to constitute substantial true formation, according this attitude it has been rejecting prosecution interrogatories and to justify its position, it mentioned the substantial true formation is not made information from formal true formation. In the previous judgment Supreme Court had admitted the substantial true information.

Nevertheless it changed its judicial precedent, by this review, the article 312 in the criminal action law has been losing its function which provides different evidence ability between police officer drawing up interrogatories and prosecution drawing up interrogatories.

In addition no one can deny that it is logical to cause a doubt about prosecution investigation process is lost its power.

In my personal opinion, I don't appreciate this judgment in a high degree.

Also, The suggested countermeasure which to prevent losing on prosecution investigation, it has been evaluating that it hasn't any effectiveness.

Foreseen non-punishment which caused by the alteration in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process, it creates restlessnes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hange this review of judgment or to permit prosecution interrogatories by legislative solution.

Keywords : prosecution, true formation, evidence ability, statement judgemen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presumption

* Professor, College of Law, Yeungnam University